

2013도4555 -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사건 보도자료

공보관(전화 : 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군 간부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9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I.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임
-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4. 12.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한 후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라는 글을 올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¹⁾
- 제1심은 대통령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고 게재글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음
- 제2심 역시 제1심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관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 역시 이유 없다고 하여 피고인과 검찰관의 항소를

1) 공소사실은 10차례에 걸쳐 상관모욕을 하였다는 것이나, 그 중 2012. 1. 10.자 상관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모욕의 대상이 대통령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음

모두 기각하였음

II. 판결 결과

■ 판결결과 ⇒ 상고기각

군형법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대통령이 상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범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관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